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6
----------	-----

2019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2일, 김광수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광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 제한 대상에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가 해당되고 있지만, 2019년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됨.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자동차 중량 및 사용 연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 총중량 2.5톤 미만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5톤 미만 자동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5조)

- 현행 조례 제15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최초등록일 기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로 규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저공해 조치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5조와 같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경유자동차 구분을 최초등록일이나 출고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기준(배출가스 5

등급<sup>1)</sup>)으로 하여 단순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비상저감조치시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총중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총중량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자동차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면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은 증가(약 9만대)하게 되겠지만, 금번 추경편성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이 904억 9천7백만원 증액<sup>2)</sup>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Euro-3 경유자동차, Euro-2 휘발유·가스자동차가 해당되며,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과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휘발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한 5등급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연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1)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서 5등급 차량은 Euro-2 휘발유·가스차량, Euro-3 경유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저감장치 부착 등 목표 대수: 11,973대(기준) → 26,973대(추경반영)  
조기폐차 목표 대수 : 30,000대(기준) → 48,000대(추경반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10조제3항)

- 안 제10조제3항은 CNG자동차 재정지원 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차량공해저감과장 추가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수는 12명으로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심의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공해저감과가 신설됨에 따라 CNG자동차 보급에 관한 업무가 대기정책과에서 차량공해저감과로 이관된 바 있음.

따라서 CNG자동차 보급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은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_____ 위원은 <u>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u> _____.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_____ 위원은 <u>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u> _____.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 기타 동 조례안 제3장(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은 제15조에서 제20조가

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경유·휘발유·가스 포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장 제목을 휘발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운행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수정(안)
제3장 <u>운행경유차</u>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제3장 <u>운행경유자동차 등</u> 저공해 촉진 및 지원

## [참고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 ~ 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량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하고,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56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하고,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함(안 제10조제3항)
-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함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  
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안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등)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5. (생략)

④ ~ ⑤ (생략)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② (생략)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위원 중 \_\_\_\_\_  
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_\_\_\_\_.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 8조에 따라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_\_\_\_\_  
\_\_\_\_\_  
\_\_\_\_\_  
\_\_\_\_\_ 따라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_\_\_\_\_  
\_\_\_\_\_ 위원 중 \_\_\_\_\_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_\_\_\_\_.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자동차 등 \_\_\_\_\_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

-----  
-----.

1. -----저공해 엔진 개조-----  
----- 의무대상 자동차
2. -----  
-----  
-----  
----- 의무대상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생략)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자동차.  
-----  
----- 배출가스저감장치  
-----  
-----.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 의무대상 자동차 -----  
-----  
-----.  
----- 저공해 조치  
----- 의무대상 자동차-----  
-----.

1. 배출가스저감장치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  
-----  
-----.

② -----  
-----  
-----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 저공해 조치 -----  
----- 10퍼센트-----  
-----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

\_\_\_\_\_.

③ \_\_\_\_\_ 따라 \_\_\_\_\_ 의무대상 자동차 \_\_\_\_\_  
\_\_\_\_\_ 저공  
해 조치\_\_\_\_\_.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_\_\_\_\_ 의무대상 자동차 \_\_\_\_\_  
\_\_\_\_\_ 의무대상 자동차 \_\_\_\_\_  
\_\_\_\_\_ 저공해 조치\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_\_\_\_\_ 저공해 조치 \_\_\_\_\_  
\_\_\_\_\_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_\_\_\_\_  
\_\_\_\_\_ 범위\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개정안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개

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  
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z시설  
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② -----  
-----  
-----  
-----  
-----  
-----범위-----  
-----.

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조건등)”을 “(재정지원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저공해 엔진개조”를 “저공해엔진 개조”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후단 중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의무대상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를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각각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를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 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그 밖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u>저공해조치</u>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 ----- <u>제58조에 따른</u> ----- ----- <u>저공해 조치</u> ----- ----- ----- ----- ----- -----.</p>
<p>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재정지원대상) ----- ----- 범위 ----- ----- ----- ----- ----- <u>제58조제3항에 따라</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u>시장</u>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5조(재정지원한도액) ----- -----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제6조(재정지원조건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p>	<p>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에 따라</u> ----- ----- -----</p>

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용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용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생략)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  
----- 제2조제2호의 따른 -----

----- 범위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  
----- 해당 연도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 중 -----  
-----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

-----.

1. ~ 5. (생략)

④ ~ ⑤ (생략)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  
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  
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  
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  
여 자금을 대출 한다.

② (생략)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  
-----  
-----  
----- 제  
8조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  
-----  
-----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자동차 등 -----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  
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  
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  
다)로 한다. -----  
-----  
-----.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 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 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생략)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

1. -----저공해엔진 개조-----  
---- 의무대상 자동차
2. -----  
-----  
----- 의무대상 자동차. --  
----- 배출가스 저감장치-----  
-----.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  
의무대상 자동차 -----  
-----  
-----  
----- 저공해 조치-----  
-- 의무대상 자동차-----  
-----.

1. 배출가스저감장치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

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

-----  
-----.

② -----  
-----  
-----  
-----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 저공해 조치 -----  
----- 10퍼센트 -----  
-----.

③ ----- 따라 ----- 의무대상 자동차 -----  
----- 저공해 조치-----.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 의무대상 자동차-----  
-----  
-----  
-----  
----- 의무대상 자동차 -----  
----- 저공해 조치-----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 저공해 조치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② -----  
-----  
-----  
범위-----  
-----.